

2022.06.01. 최초공개
2024.03.01. 일부개정

2022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2024

개정 연혁

- 2024.03.01** **일부개정**
- 1.1.1.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1-5. 개정
 - 1.1.2.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1-7. 개정
 - 1.2.1. 기준 개정
 - 내용설명 개정
 -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1-18., A1-21., A1-23. 개정
 - 보관자료 B1-2., B1-3. 개정
 - 1.2.2.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1-25., A1-26, A1-28 개정, A1-27. 삭제
 - 보관자료 B1-4., B1-6. 개정
 - 2.1.1.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2-7. 개정
 - 2.2.2. 내용설명 개정
 - 2.3.1. 내용설명 개정
 -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2-38. 개정
 - 2.4.1. 보관자료 B2-30. 삭제
 - 2.4.2. 내용설명 개정
 - 3.1.1.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3-6. 개정, A3-7. 삭제
 - 4.1.1.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4-2., A4-3. 개정
 - 4.1.2.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4-7., A4-8. 개정
 - 4.3.1. 내용설명 개정
 - 4.3.2. 내용설명 개정

CONTENTS

머리말	1
필수사항	3
용어설명	5
영역별 평가 기준	11
2022 치과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13
2022 치과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내용설명 포함)	23
1.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 질개선	25
1.1. 교육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교육 운영 체계	25
1.2. 자체 평가와 지속적 질개선	27
2. 교육과정	29
2.1. 역량	29
2.2.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31
2.3. 학생평가	38
2.4. 환자중심 임상교육	42
3. 학생	47
3.1. 학생선발	47
3.2. 학생의 학습환경	49
3.3.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51

CONTENTS . . .

3.4. 학생의 복지와 재정관리의 지원	53
3.5. 학생 활동지원	55
4. 교육환경-교수 및 자원	57
4.1. 교수	57
4.2.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59
4.3. 교수 개발 및 지원	61
4.4. 교육자원의 관리 및 운영	63
4.5. 연구활동 지원 시설 및 자원	65
4.6. 임상교육 환경	67
5. 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70
5.1 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70

머 리 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2022년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이하 ‘2022 인증기준’)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기본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질적 개선을 통해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구강건강과 진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을 기반으로,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한다. 치의학교육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치의학교육의 질개선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은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명확한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유인을 제공한다. 치과의사 양성을 책임지는 교육프로그램은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찾아내며, 이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국제사회에서 한국 치과의료의 탁월함이 인정받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의 의의가 있다.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은 2008년 이래 대한민국 치의학교육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 인증기준은 치의학기본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존 인증기준에서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인증기준은 국내·외 치의학교육의 발전에 맞추어 각 프로그램이 우리사회가 새로운 치과의사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교육이 성과에 기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연관된 평가기준을 확충하였다. 더불어 학교의 사회적 책무 수행 과정에 학생 교육이 유기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자 중심진료의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2 인증기준은 치의학교육의 지속적 질개선에 초점을 두고 학교의 자체평가 노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방식을 변경하였다. 학교는 매년 기준에 따른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인증기간의 종료에 따라 기준 성취 결과를 추가로 작성하는 수고를 줄이고 교육질개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인증기준의 중요한 관심사는 평가대상이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개선지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자체평가 노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학교는 매년 기준에 따른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기준 성취 결과를 한꺼번에 작성하는 학교의 수고를 줄이고 교육의 개선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해 치의학교육의 질보장을 지원한다. 평가·인증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과 치과의료기관 등에 대해 치의학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능력과 교육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의학교육의 발전과 치과 의사의 질보장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학교는 2022 인증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가 원하는 우수한 치과 의료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치의학교육 및 치과 의사의 역량이 국제적인 수준을 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필수사항

1. 2022 인증기준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과대학(원)’) 체제를 갖고 있는 대학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즉,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은 치과 의사 양성 프로그램에 적용합니다.
2. 새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매년 시행합니다. 기준에 따른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는 2021년(2021.3.1~2022.2.28)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학교가 매년 변동사항과 자체평가결과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의 웹기반 입력사이트 KODEA.kidee.org에 입력합니다. 자체평가결과의 입력과 관리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3. 치과대학에서 치의예과와 치의학과로 구분된 경우 치의학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기술하며 치의예과의 교육과정 중 치의학기본교육에 해당하는 기준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기술합니다. 6년제 학제의 경우 6년의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합니다.
4. 2022 인증기준은 치과대학(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기준입니다.
5.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은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내용작성]은 각 기준의 자체평가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7.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는 2022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해당년도에 진행된(예: 2021학년도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활동내용과 근거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년도에 진행된 내용이 없는 경우 “진행사항 없음”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입력하면 됩니다.
8. [보관자료]는 2022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문서로 모든 보완 및 입증자료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별도 보관이 어려운 경우 색인 목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관 기한은 직전 평가 이후 차기 평가까지 전체 기간입니다.

9. 회의개요에는 회의 일자, 참석자, 회의 주제, 회의내용 요약, 결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 회의자료에는 회의 시 배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회의록에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2.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의 제공된 서식은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용 어 설 명

● 교육과정평가

교육과정평가는 치평원의 인증과정에서 학교의 자체평가 활동의 핵심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개발부터 실행, 성과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이다. 학교의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들이 교육과정이 적절히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가치와 질을 판단하는 행위이다. 교육과정평가는 학교의 자체적 역할이 중심이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주체적,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고 실행된 교육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그 과정내부에서의 상호작용 및 교육과정 지원 시스템 전체를 포함한다.

● 교육전담 조직

교육실, 교육지원실, 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가 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행정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조직에는 운영규정과 임기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된 책임자, 교육전문가를 포함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행정조직이나 위원회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형태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조직은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 교육철학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언이다.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관이며, 소속된 종합대학의 이념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내용과 함께 교육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정의된다.

교육목적은 교육철학에서 제시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치과대학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다. 여기에는 교육철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학교는 이것을 비전과 미션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세부 교육목표의 상위개념으로 교육의 방향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 쓸 필요가 있다. 교육목표에는 학생수준의 세부적인 성취목표를 상세히 기술한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목적(철학) 기술의 예시)

- 치과대학은 치아와 구강악안면부위 및 그와 관련된 신체에 관한 학문의 교육을 통하

여 치과의사와 치의학자를 양성하고, 이의 기초 및 임상적 연구를 통해 치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치아와 구강악안면부위의 질환 및 기형, 발육장애 등의 예방과 치료를 통한 의료활동으로 인류의 구강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성원**

학교의 구성원은 교수, 학생,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개발한 역량(연도)으로써 치의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서 기대되는 능력을 행동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한 목록이다.

● **리더십 프로그램**

리더십은 전문의료인을 양성하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그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과정의 학생들에게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 지도자로서의 치과의사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훈련과정은 단순히 일방적인 단순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 과정에는 별도로 선발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과정은 외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최종 목표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 내부의 논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행위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제시된 명제(학습자료)에서 참이라고 주장하는 진술에 대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제공된 증거와 추론을 검사하여 사실들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을 하는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의 배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추론은 엄정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근거기반의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판단과 해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창의적 사고)

○ 사회적 기여

사회적 기여는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캠페인의 수준을 넘어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기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여기에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취목표(횟수나 분량이 아닌 사회의 변화를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치의학교육 프로그램 내부의 논의와 대상 지역사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례제시)

- 치과대학은 지역사회구강보건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가 위치하는 ○○시 ○○구를 목표지역으로 설정해서 지역치과의사회와 ○○구청, 자원봉사자 모임인 ○○회와 함께 12세 이하 아동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생과 교수가 팀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하였으며, 필요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일차목표를 ○○, 기간을 ○년으로 설정하였다.

○ 성과 (교육성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활동방향을 밝힌 것이다.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의 하위차원으로 현실적, 기술적 입장으로 목적 달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습경험(교육내용)을 통한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치의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서 기대되는 능력을 행동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술한 목록이며,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가 교육성과를 의미한다.

(교육성과 기술의 예시)

- 전신질환의 증상을 인식할 수 있고, 전신질환 및 해당질환의 관리방법이 치과진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 모든 임상절차에서 보편적인 감염관리 규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 기반 교육(OBE)은 목표(성과)를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의 각 부분이 구성되는 교육 이론입니다. 교육 경험이 끝나면 각 학생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OBE에는 지정된 단일 스타일의 교육 또는 평가가 없습니다. 대신 수업, 기회 및 평가는 모두 학생들이 지정된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교수진의 역할은 목표한 결과에 따라 강사, 트레이너, 촉진자 또는 멘토로 조정된다.

○ 역량

치과의사로서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조합을 의미한다.

- 역량은 교육의 결과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 역량은 수행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 역량은 총체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역량은 지식이나 기능과 같이 상대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수행으로 드러나기 쉬운 측면뿐 아니라 동기와 태도와 같이 인간의 심층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능력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별개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역량평가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일차진료 수준의 의료가 가능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초 및 임상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의료인문학

바람직한 치과의사란 환자 개개인의 개성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 환자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의료 경험이나 지식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춘 의사를 말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인문학에는 의료윤리와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통합성(integrity)과 반성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들이 포함된다.

○ 일차진료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으로서 제도적으로는 주민이 보건의료체계에 처음 접하는 관문(first contact care)이며, 기술적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 보건의료(comprehensive health care)를 의미한다.

○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교육 형태에 대한 철학으로 어떤 주어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전문가 양성의 교육목표에서 주어진 최종학습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의 (전) 과정을 본인 학습설계에 따라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주도학습에서는 학습 전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세가 강조된다. 전통적 교육철학에서와 달리 자기주도학습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학습자가 명령이나 강제에 의해 학습을 강요받는 일련의 행위보다는 학습자가 교수자를 이용(조력)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강조된다. 즉,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이며 교수는 학습자에 대해 도움을 주는 '지원자(조력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전문상담체계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전임교수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보고 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수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수에 관한 보수 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

● 진료보조인력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 최소임상역량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일차진료 수준의 의료가 가능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상역량이다. 학교별 설정된 최소임상역량을 기술한다.

● 치과대학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6년제(치의학과 학사과정은 4년, 치의예과 교육과정은 2년)의 학사학위 수여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치과의사 양성교육기관이 대상이며, 해외 교육기관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의를 양성하는 4년제의 (전문)석사학위 수여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치과 의사 양성교육기관이 대상이며, 해외 교육기관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 치의학도서관

인체 중 구강악안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과 관련된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전자자료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치과대학(원) 학생 등이 볼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시설이다. 의학도서관으로 설치하는 경우 치의학 관련자료(기초 생의학 자료 포함)와 해당 자료 구입/유지 예산의 비율이 적어도 이용하는 학생 중 치과대학(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높아야 한다.

○ 학교

학교는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의미한다.

○ 학생자치활동

학생이 집단으로 자주적인 학교생활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외 활동으로, 학생회 활동, 각종 동아리 활동, 자율적인 학술교류 모임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 학생진료의 질관리

학생진료도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진료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진료 실패(수복물 파절이나 탈락 등)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환자만족도 같은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학생진료 수준을 파악하는 일을 말한다.

○ 환자중심진료

환자를 개별 시술 행위를 시행해 보는 실습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수행하는 진료를 말한다.

학생교육에서 환자중심 진료는 환자를 단순히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지를 가진 개인으로서 인식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환자에 대한 존중, 정보의 공유, 환자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의료환경에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영역별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부문	세부기준	
		대학	대학원
1.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 질개선	1.1. 교육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교육 운영 체계	2	2
	1.2. 자체 평가와 지속적 질개선	2	2
	소계	4	4
2. 교육과정	2.1. 역량	2	2
	2.2.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7	7
	2.3. 학생평가	4	4
	2.4. 환자중심 임상교육	5	5
	소계	18	18
3. 학생	3.1. 학생선발	2	2
	3.2. 학생의 학습환경	2	2
	3.3.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2	2
	3.4. 학생의 복지와 재정관리의 지원	2	2
	3.5. 학생 활동지원	2	2
	소계	10	10
4. 교육환경 - 교수 및 자원	4.1. 교수	2	2
	4.2.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2	2
	4.3. 교수 개발 및 지원	2	2
	4.4. 교육자원의 관리 및 운영	2	2
	4.5. 연구활동 지원 시설 및 자원	2	2
	4.6. 임상교육 환경	3	3
	소계	13	13
5. 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5.1 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0	3
	소계	0	3
합계		45	48

**2022 치과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1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 질개선

1.1. 교육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교육 운영 체계

- 1.1.1. 학교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1.2. 학교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1.2. 자체평가와 지속적 질개선

- 1.2.1. 학교는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평가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발전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 1.2.2. 학교는 수립된 발전계획과 그 실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질개선을 하여야 한다.

2.1. 역량

- 2.1.1. 학교는 역량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2.1.2. 학교의 역량은 구체적인 학습성과(성취범위와 수준)를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 2.2.1. 학교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운영 그리고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전담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 2.2.2. 학교는 졸업역량과 과목별 학습성취를 연결하여, 학생이 단계적으로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 2.2.3. 교육과정에는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의료인문학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4. 학교는 창의성, 학습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2.2.5. 학교는 학생 봉사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2.2.6. 학교는 학생들이 연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2.2.7. 교육과정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의 개선은 이를 근거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학생평가

- 2.3.1. 학교는 학생평가의 범위, 기간, 내용, 방법 및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학생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3.2. 학교는 사전에 학생에게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2.3.3. 학교는 학생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최종적으로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2.3.4. 학교는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역량을 성취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2.4. 환자중심 임상교육

- 2.4.1. 학교는 학생에게 환자중심 진료를 교육해야 한다.
- 2.4.2. 학교는 학생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전에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2.4.3.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술기 역량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2.4.4. 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진료의 질관리를 해야 한다.
- 2.4.5. 학교는 역량 달성에 필요한 적정한 환자 수요를 제공해야 하며, 임상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학생의 임상진료실습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학생

3.1. 학생선발

- 3.1.1. 학생선발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3.1.2. 학생선발에서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학생의 학습환경

- 3.2.1. 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체계와 전문진로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3.2.2.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3.3.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 3.3.1.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체제가 있어야 한다.
- 3.3.2. 학교와 병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3.4. 학생의 복지와 재정관리의 지원

- 3.4.1. 학교는 학생에게 적절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 3.4.2. 학교는 학생에게 졸업에 필요한 교육비용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3.5. 학생 활동지원

- 3.5.1. 학생 자치기구와 학생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 3.5.2. 학교는 학생이 학교의 운영체계(governance)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교육환경-교수 및 자원

4.1. 교수

- 4.1.1. 학교는 치의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및 임상 교수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1.2. 학교는 치의학교육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위한 교육학 교수와 학생의 인문사회적 역량을 위한 의료인문학 관련 분야 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4.2.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 4.2.1. 교수의 교육활동은 학교가 수립한 교육정책에 따라 학생의 역량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 4.2.2. 학교는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 조직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4.3. 교수 개발 및 지원

- 4.3.1. 학교는 체계적으로 수립된 교수개발정책을 갖추어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 성과를 교수의 교육과정 업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 4.3.2. 학교는 명시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 연구, 봉사 성과 등의 교수 업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4. 교육자원의 관리 및 운영

- 4.4.1.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기본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4.4.2. 학교는 구성원이 교육 운영을 포함한 제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5. 연구활동 지원 시설 및 자원

- 4.5.1. 학교는 교수와 학생의 연구를 위한 실험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4.5.2. 학교는 교수 및 학생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실험실과 설비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6. 임상교육 환경

- 4.6.1. 학교는 학생 임상교육을 위한 전담기구와 학생 수에 충분한 학생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6.2. 학생진료시설을 전담하는 진료보조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 4.6.3. 학생진료시설의 임상교육 담당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관리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

5

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5.1. 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5.1.1. 전문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5.1.2. 전문석사학위 졸업생의 최종성적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5.1.3. 전문석사학위 수여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2022 치과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 내용설명 포함 -

1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 질개선

1.1 교육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교육 운영 체계

1.1.1. 학교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은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이 되고, 교육평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모대학의 교육이념에 근거한 교육철학 및 교육목적을 기술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행동해야 한다. 학교는 구성원 전체의 사회적 기여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구성원의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여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여 알리거나 개선하는 절차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1-1. 학교의 교육철학(교육이념)과 교육목적
- A1-2. 학교와 모대학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연계성
- A1-3. 교육철학, 교육목적이 개정된 경우 개정 절차 및 개요
- A1-4. 해당년도 학교 구성원이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인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공문, 사진, 사례, 교육일정, 강의계획서 중 해당 내용, 홍보자료 및 사회봉사활동 현황 등을 정리한 목록과 그 외 증명할 자료)
- A1-5. 해당년도 사회적 기여활동 내용, 성과 분석 및 평가자료
- A1-6. 해당년도 구성원의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내용 요약, 일정, 참석자 등)

1.1.2. 학교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소속 대학의 구성원이 접근하기 쉽고 투명성을 갖춘 행정 조직을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행정조직은 공개된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의사결정에는 교수, 직원, 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모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학교의 각 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그 운영과 성과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고 구성원에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운영책임자(학(원)장, 부학(원)장 등)의 선임 절차, 임기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책임자와 교직원의 자격, 권한, 책임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조직의 접근성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1-7. 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 (조직도, 조직의 역할, 보직자 명단,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
- A1-8. 학교의 제규정: 학교 운영규정 및 위원회 규정 (구성, 역할, 정책결정 절차 등을 포함하며 전체 규정의 목록과 각 규정의 목적 등은 반드시 수록하며 나머지는 별도 관리가능)
- A1-9. 학교운영책임자(학(원)장, 부학(원)장 등) 관련 규정 (자격, 권한, 책임, 선임절차, 임기)
- A1-10. 교직원 관련 규정 (자격, 권한, 책임)
- A1-11. 행정 업무지원 지침 (서비스 매뉴얼)
- A1-12. 학교와 모대학과의 의사소통 구조 및 절차 (학교의 의견이 반영되는 모대학의 규정과 대학 본부의 회의체 현황)
- A1-13. 해당년도 모대학과의 협의 내용
- A1-14. 해당년도 학교의 각 위원회 운영 실적 (회의 일자, 참석자, 회의 주제, 회의내용 요약, 결의사항 등)
- A1-15. 해당년도 학(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연차 보고서 (구성원 대상 배포 자료로서 학(원)장 주관으로 작성: 외부공개가 바람직하나 공개 여부는 학교가 결정)
- A1-16. 해당년도 행정조직 업무 담당자 안내 현황
- A1-17. 해당년도 학생 및 직원 의견이 반영된 실적

1.2. 자체평가와 지속적 질개선

1.2.1. 학교는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평가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발전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지속적 질개선을 위한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발전계획은 기간이 명시된 문서로서 계획의 전체기간과 각 연도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포함되고, 계획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정 과정에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발전계획은 모대학 혹은 재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구성원 또는 일반 대중에 공개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학교의 발전계획 자체평가에는 발전계획의 개선사항으로 직전 자체평가보고서와 치평원의 해당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인증 최종논평서에서 지적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간 운영계획은 구체적인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예산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학교 연간 예산의 편성 절차, 결산 및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운영 조직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원과 학생을 상대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결산을 구성원 또는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보고내용의 범위는 해당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나 본교의 규정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1-18. 학교의 치의학교육프로그램 중장기 발전계획 개요 (발전계획의 평가항목과 평가 기준, 평가방안 포함)
- A1-19. 발전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 및 평가기구 관련규정
- A1-20.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관련 규정
- A1-21. 해당년도 발전계획(수립 관련) 위원회 회의 개요
- A1-22. 해당년도 학교의 각종 예산 수립 및 편성 절차에 대한 규정
- A1-23. 해당년도 연간 운영계획 및 발전계획 관련 예산
- A1-24. 해당년도 발전기금 현황표

[보관자료]

- B1-1. 발전계획서
- B1-2. 해당년도 발전계획 예산 자료
- B1-3. 해당년도 발전계획(수립 관련)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1.2.2. 학교는 수립된 발전계획과 그 실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질개선을 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지속적 질개선을 위한 발전계획의 평가는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자체평가에 기반하나 필요 시 외부 평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외부 인사는 학교 구성원을 제외한 모대학, 타 대학, 동문 등 독립적인 외부인을 말한다.) 모든 평가는 사전에 정해진(1.2.1.) 규정과 평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계획의 이행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상설 기구가 있어야 하며, 발전계획 이행에 따른 성과 및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와 개선 사항은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1-25. 해당년도 발전계획(평가 관련) 위원회 회의 개요
- A1-26. 해당년도 발전계획 성과평가 과정 및 결과 개요 (성과평가 시스템 및 평가 결과, 개선 사항 내용 포함)
- A1-27. <삭제 2024. 03. 01.>
- A1-28. 해당년도 발전계획에 따른 결산 개요
- A1-29. 해당년도 회계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정보
- A1-30. 해당년도 발전계획 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사항을 공개한 자료

[보관자료]

- B1-4. 해당년도 발전계획(평가 관련)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B1-5. 해당년도 발전계획 평가보고서
- B1-6. 해당년도 발전계획 결산 자료

2

교육과정

2.1. 역량

2.1.1. 학교는 역량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졸업생이 성취해야 할 능력의 범위와 수준을 명시한 구체적인 역량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학교의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학교는 매년 역량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역량에 반영하여 필요 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1. 학교의 역량 문서 (변경이 있을 시 변경사항 설명)
- A2-2. 역량 수립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서
- A2-3.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
- A2-4. 해당년도 진행한 역량검토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 개요
- A2-5. 해당년도 진행한 역량에 대한 교육담당자(교수, 외래교수, 겸임교수, 전공의 등) 및 학생 교육 내용
- A2-6. 해당년도 진행한 역량 검토와 평가 자료 (각종 설문 및 분석 결과)
- A2-7. 진행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선 사항

[보관자료]

- B2-1. 해당년도 배포한 학교의 역량 문서
- B2-2. 해당년도 배포한 학생역량평가 기준 자료
- B2-3. 해당년도 배포한 학생 및 교수 대상 역량 교육 자료
- B2-4. 해당년도 진행한 역량 관련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B2-5. 해당년도 역량 검토 보고서 (관련 조사 자료)
- B2-6. 해당년도 진행한 역량검토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자료 및 회의록

2.1.2. 학교의 역량은 구체적인 학습성과(성취범위와 수준)를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모든 역량에 대해 학습성과를 정의하여 교육과정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각 역량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역량평가방법이 개별 강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2-8. 역량 성취를 위한 학년별 교과목 개요 (학교가 정한 모든 역량에 따른 학습 성과를 기술하고, 교과목은 임상/기초/의료인문학으로 구분하여 작성)

A2-9. 역량 성취를 위한 교육 및 평가체계 (교과목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연결 관계 포함하여 작성)

[보관자료]

B2-7. 해당년도 배포한 강의계획서

2.2.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2.2.1. 학교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운영 그리고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전담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내용설명

교육전담 조직은 상설조직이다. 교육전담 조직에는 교육실행과 교육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학 교수와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교육 관련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조직으로 위원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10. 학교의 교육전담 조직에 대한 규정 및 지침
- A2-11. 해당년도 교육전담 조직의 구성원 명단과 담당업무
- A2-12. 해당년도 교육전담 조직 운영 기록, 성과, 예산 및 집행실적 현황
- A2-13. 해당년도 교육전담 조직 관련 위원회 회의 개요

[보관자료]

- B2-8. 해당년도 교육전담 조직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수발 문서, 관련 배포자료 등
- B2-9. 해당년도 교육 관련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2.2.2. 학교는 졸업역량과 과목별 학습성취를 연결하여, 학생이 단계적으로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교과목의 구성과 교육방법 등이 역량 달성에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현재의 학생 및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과 합의 절차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14. 교육과정 설계 및 개편 절차
- A2-15. 해당년도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협의과정 개요 (회의 일자, 참석자, 회의 주제, 회의 내용 요약, 결의사항 등) 및 관련 위원회 명단
- A2-16. 해당년도 교과목 책임교수(담당교수) 배정 관련 자료

[보관자료]

- B2-10. 해당년도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협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2.2.3. 교육과정에는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의료인문학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설명

치의학교육과정은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및 의료인문학이 서로 간에 균형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및 의료인문학은 과목별로 분리하여 교육할 수 있으나 각 교육단위 간의 교육내용의 연계가 역량과 연결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및 의료인문학을 통합한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각 과목의 배분과 구성이 적절하여야 한다.

의료인문학 교육은 인문학적 소양의 교육에서 출발할 수 있으나 임상적 상황에 대한 연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윤리와 의사소통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통합성(integrity)과 성찰(reflection)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17. 해당년도 기초치의학 교육과목 목록, 관련역량, 교육 시간 개요
- A2-18. 해당년도 임상치의학 교육과목 목록, 관련역량, 교육 시간 개요
- A2-19. 해당년도 의료인문학 교육과목 목록, 관련역량, 교육 시간 개요
- A2-20. 해당년도 통합교과의 경우 개요 및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및 의료인문학의 구성의 설명 자료

[보관자료]

- B2-11. 해당년도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별 배분의 종합편성표
- B2-12. 해당년도 학생교육 자료집 (강의록 등)

2.2.4. 학교는 창의성, 학습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내용설명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치과의사로서 우리 사회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넘어 창의성과 지속적 학습능력, 리더십이 있는 졸업생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학생의 자율적 학습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자율적 시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율적 목표 설정과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의 교육담당자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교수자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관련자가 촉진자(facilitator)로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간의 일정부분 이상을 학생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학습자중심의 강좌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기반치의학은 자기주도학습과 비판적 사고의 기본이 되므로 근거기반치의학 훈련은 반드시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기반치의학은 교육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 성과는 학생들의 과제, 발표물 등에서 드러나므로 모든 교과에서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자료(보고서, 발표자료, 녹화기록 등을 이용한 근거기반치의학에 따른 평가기준)를 활용하여야 한다.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리더십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교육설계가 필요하다.

창의성, 학습능력 및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역진행수업, 소그룹학습, 봉사학습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PBL, TBL과 같은 학습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21. 해당년도 학년별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
- A2-22. 해당년도 근거기반치의학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
- A2-23. 해당년도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요
- A2-24. 해당년도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목록 (학생평가 방법 포함)

2.2.5. 학교는 학생 봉사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봉사 활동은 자율적 활동을 통해 학생의 리더십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학생이 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학생 봉사 활동은 구체적인 목적과 성취내용을 기반으로 교내외 기관 및 시설에서의 수행을 위한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봉사 활동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점을 부여하거나 진급요건 또는 졸업요건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학생의 봉사를 시간만으로 평가할 경우 학생이 적절한 교육 성과를 성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활동 보고서 또는 활동 내역 발표 및 피드백 등의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 봉사 활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2-25. 해당년도 학생 봉사 활동 교육과정 (교과목 개요 및 내용)

A2-26. 해당년도 학생 봉사 활동 교육과정 지원 조직 구성 및 활동 현황

A2-27. 해당년도 학생 봉사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2.2.6. 학교는 학생들이 연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연구에 대한 교육은 학생의 개별 연구를 장려하는 동시에,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장래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구수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학생이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독려하는 행·재정적 체계가 필요하며, 연구 참여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28. 학생연구 관련 규정 (학생이 연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
- A2-29. 교육과정 중 연구영역 개요 (학생연구 기획 관련 교육)
- A2-30. 해당년도 학생연구 기획 및 수행 과정 개요 (학생연구 프로그램 등)
- A2-31. 해당년도 학생연구비 수혜자 및 연구 성과 개요

[보관자료]

- B2-13. 해당년도 학생연구비 수혜자의 연구 성과 보고서

2.2.7. 교육과정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의 개선은 이를 근거로 시행되어야 한다.

내용설명

교육과정평가는 학교가 사전에 수립한 평가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교과목 담당 교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세부 교과목 단위의 개인 학습성과와 성취도를 교육전담 조직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전담 조직은 (1) 학생의 역량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이를 반드시 전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2) 평가자와 피평가자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3) 교육내용의 수준이나 범위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효과성, 평가방법의 타당성 및 객관성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4)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평가의 결과와 개선방안을 매년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여 구성원이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학교는 발견된 문제점을 적절한 기간 내에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32. 교육과정 평가체계
- A2-33. 해당년도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설문내용 및 분석 결과
- A2-34. 해당년도 교육과정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이나 실적 자료
- A2-35. 해당년도 교육과정 평가 관련 위원회 회의 개요

[보관자료]

- B2-14. 해당년도 교육과정 평가 보고서
- B2-15. 해당년도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설문지(양식) 및 설문결과보고서
- B2-16. 해당년도 교육과정 평가 관련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2.3. 학생평가

2.3.1. 학교는 학생평가의 범위, 기간, 내용, 방법 및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학생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평가는 성취해야 할 역량의 달성 기준을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판단하여,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역량의 달성기준은 사전에 검토, 확정되어 교수 및 학생에게 제공되어, 학습과정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시된 역량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은 문서화된 형태로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계획서는 학생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피드백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공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학생역량평가 결과에는 적합성의 판정과 그 사유, 향후 개선의 방법이 개인별로 기록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체 학생의 성적과 경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36. 역량기반 학생평가체계 개요 (시기, 방법, 피드백 방법 등)
- A2-37. 역량평가 관련 규정과 절차
- A2-38. 역량평가 방법 (교과목별 및 비교과목별)
- A2-39. 해당년도 진행한 역량평가위원회(학생평가 관련) 회의 개요 (회의 일자, 참석자, 회의 주제, 회의내용 요약, 결의사항 등)

[보관자료]

- B2-17. 학생역량평가체계 (전체 교육과정 평가 계획, 교과목별 평가 계획, 역량별 달성기준)
- B2-18. 해당년도 역량평가위원회(학생평가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B2-19. 해당년도 학생역량평가보고서(학생별로 모든 역량에 대한 달성여부와 부족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하는 평가결과 기록)

2.3.2. 학교는 사전에 학생에게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모든 역량에 대해 미리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전에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역량평가는 학교가 정한 역량기준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각 항목별 구체적 평가 대상과 방법, 역량달성기준은 학교가 정하여 사전에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역량의 달성기준은 사전에 검토 및 확정 후 교수 및 학생에게 제공되어, 학생의 학습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2-40. 해당년도 학생에게 제공한 역량평가 안내 현황 (일시, 방법 등)

[보관자료]

B2-20. 해당년도 학생에게 제공한 역량평가 안내 자료

2.3.3. 학교는 학생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최종적으로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역량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부족한 사항에 관해 학생에게 문서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역량별로 적합성의 판정과 그 사유, 향후 개선의 방법이 개인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정해진 양식에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보관한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피드백은 교육계획서에 제공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평가와 관련된 피드백 내용과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급 및 졸업 조건에 해당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2-41. 해당년도 역량평가 결과 요약 및 피드백 현황 (피드백의 양식, 제공 시기, 방법 등)

[보관자료]

B2-21. 해당년도 개인별 학생역량평가 피드백 자료 (환자 대상 역량평가 포함)

B2-22. 해당년도 역량평가 후 학생의 추가 교육 관련 자료

2.3.4. 학교는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역량을 성취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설명

졸업에 필요한 역량은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성취한 역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학교는 졸업 시점에서 학생이 어느 수준까지 역량을 성취해야 하는지 정한 다음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는 졸업에 필요한 역량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를 할 수도 있으나, 기존에 시행된 단계별 역량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역량을 성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2-42. 졸업에 필요한 역량 성취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체계 설명

A2-43. 해당년도 졸업에 필요한 역량 성취 확인 결과

A2-44. 해당년도 졸업에 필요한 역량평가를 별도로 진행한 경우 관련 자료

[보관자료]

B2-23. 해당년도 졸업에 필요한 개인별 역량 성취 결과

2.4. 환자중심 임상교육

2.4.1. 학교는 학생에게 환자중심 진료를 교육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교육에서 환자중심 진료란, 환자를 단순히 진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가진 개인으로서 인식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환자에 대한 존중과 정보의 공유, 환자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의료환경에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자중심의 임상교육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학생이 인식하고 실제 행동에서도 교수와 함께 기본 원칙에 따라 환자를 대하고 실습평가에 임하는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교육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학교는 방사선과 감염에 대한 안전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환자 불만 개선 및 환자 정보 보호 등을 학생에게 교육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45. 환자중심 진료를 위한 학생지도 교육 자료 개요
- A2-46. 환자중심 진료를 위한 학생지도 지침 개요
- A2-47. 환자 응대에 대한 교육 자료 개요
- A2-48. 환자 불만 및 고충 처리 규정 및 지침 개요
- A2-49. 학생진료실 안전/감염관리 (Safety/Infection Control Compliance) 규정
- A2-50. 해당년도 환자중심의 진료를 위한 교육 및 평가 내용

[보관자료]

- B2-24. 환자중심 진료를 위한 학생지도 교육 자료
- B2-25. 환자중심 진료를 위한 학생지도 지침
- B2-26. 환자 응대에 대한 교육 자료
- B2-27. 환자 불만 및 고충 처리 규정 및 지침
- B2-28. 학생 대상 응급 상황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
- B2-29. 학생 대상 환자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자료
- B2-30. <삭제 2024. 03. 01.>

2.4.2. 학교는 학생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전에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임상교육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환자에게 안전한 임상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안전한 진료의 준비는 환자중심진료의 기본 요구로서 학생은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수준의 적절한 훈련을 거쳐 지식과 술기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태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학교는 이것을 다양한 평가를 통해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적인 평가만이 아닌 의료인은 항상 환자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이 임상교육에서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즉 환자의 권리와 전문가로서 환자에 대한 태도를 숙지했는지를 이해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도구 및 재료 선택,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충분히 학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임상교육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포함한 재교육을 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51. 해당년도 환자 진료 참가를 위한 학생평가 개요
- A2-52. 해당년도 환자 진료 참가를 위한 학생평가 결과 개요
- A2-53. 해당년도 환자 진료 참가를 위한 학생평가 피드백 자료

[보관자료]

- B2-31. 해당년도 환자 진료 참가를 위한 학생평가 결과 (시험 문제 포함)

2.4.3.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술기 역량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술기 역량평가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단 (2) 수복치료 (3) 외과적 치료(치주치료 포함) (4) 예방처치

위 내용에서 실제 임상술기 역량의 평가대상은 교육 환경과 역량성취에 적절한 수준으로 학교가 정한다.

해당 역량의 평가는 적합한 교육자의 관리 하에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술기 역량평가 전에 환자에게 학생진료에 대해 알리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2-54. 역량평가에서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내용

A2-55. 해당년도 최종 역량평가 중 환자 대상 시행 항목 개요

A2-56. 해당년도 학생진료 환자의 동의 내용 (개인정보 미포함)

2.4.4. 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진료의 질관리를 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임상실습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임상진료환경에 대한 교수, 직원, 학생, 환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임상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57. 해당년도 학생진료 관련 위원회 회의 개요
- A2-58. 해당년도 임상교육환경 조사 보고서 현황
- A2-59. 해당년도 설문조사 개요
- A2-60. 해당년도 학생진료실 문제상황 발생 보고 현황
- A2-61. 해당년도 학생진료실의 환자 만족도 평가 결과 개요
- A2-62. 해당년도 학생진료 시 환자의 민원 및 학생-환자 갈등상황에 대한 보고

[보관자료]

- B2-32. 해당년도 학생진료 관련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B2-33. 해당년도 임상교육환경 조사 보고서
- B2-34. 해당년도 학생진료실 문제상황 발생 보고서
- B2-35. 해당년도 설문조사 자료 (설문양식 및 설문결과 포함)
- B2-36. 해당년도 학생진료실의 환자 만족도 평가 결과지

2.4.5. 학교는 역량 달성에 필요한 적정한 환자 수요를 제공해야 하며, 임상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학생의 임상진료실습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 임상교육에 필요한 환자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환자 수요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인에게 학생진료에 대해 알리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2-63. 해당년도 학생진료실 환자 수요 제공 체계
- A2-64. 해당년도 환자 수요 제공을 위한 활동 및 결과
- A2-65. 해당년도 학생진료실 소개 및 홍보 활동 내용
- A2-66. 해당년도 학생진료실 환자 수급현황

[보관자료]

- B2-37. 해당년도 학생진료실 소개 및 홍보 활동 자료 (홈페이지, 브로셔 등)

3 학생

3.1. 학생선발

3.1.1. 학생선발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선발 방법, 과정에서 교육이념 및 비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학생선발 기준과 원칙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비록 선발 과정에서의 학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도, 바람직한 치과의사로서 양성할 대상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치의학기본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적 의무이다.

학생선발 방법, 절차(지원서 접수, 서류평가, 면접 등의 심사과정, 합격 통보 및 후보자 선발 등)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학생선발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3-1. 학생선발기준과 수립 배경, 수립 과정, 시행계획, 모집 시기, 전형별 모집인원
- A3-2. 학생선발을 위한 정책(특성화, 비전 및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모집 유형, 선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위원회 및 교수회의 보고 등에 관한 실적
- A3-3.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 A3-4. 편입 학생선발 절차의 공정성 관리
- A3-5. 해당년도 학생선발에 관하여 공개한 자료 (입학설명회, 홈페이지 등)
- A3-6. 해당년도 학생선발제도 관련 학생 의견, 평가 및 피드백 결과와 교육성취 연계성 분석 결과
- A3-7. <삭제 2024. 03. 01.>

[보관자료]

- B3-1. 해당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 B3-2. 해당년도 입학지원 안내서
- B3-3. 해당년도 입학설명회 자료 (책자, 안내서 외 그 외 자료)
- B3-4. 해당년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B3-5. 해당년도 학생선발과 선발제도의 개선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

3.1.2. 학생선발에서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지원자들의 다양한 배경(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차이 등)을 고려한 선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적용하여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3-8. 다양한 배경 지원자의 인재 선발 관련 개요 (전형 및 선발인원)

A3-9. 해당년도 학생선발에 관한 모대학과의 협의 내용

3.2. 학생의 학습환경

3.2.1. 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체계와 전문진로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 지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학습, 학교생활, 진로 등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이를 위한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습, 학교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예: 장기 결석자, 유급 대상자 등)과 폭력(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지되어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는 졸업생들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률과 학업성취도 또는 졸업평가를 비교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학교는 불합격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3-10. 학생지도를 위한 조직의 규정 및 지침과 구성원 명단
- A3-11. 학생지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개요
- A3-12. 학생 상담 체계 관련 설명 (안내문, 전문상담 현황, 전문 상담자 현황 및 전문 진로 상담자 현황 등)
- A3-13. 학생성적관리대상자 지원 현황
- A3-14. 해당년도 치과의사국가시험 관련 설명 (합격률, 합격률 분석)
- A3-15. 해당년도 졸업생의 취업률 현황 및 분석
- A3-16. 해당년도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자 지원 정책 및 지원 실적

[보관자료]

- B3-6. 해당년도 학생지도를 위한 세미나, 특강 자료

3.2.2.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정보 환경(예: 치의학도서관, 컴퓨터 열람실, 온라인 도서관 등)은 학생들의 역량 성취를 위한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학교는 학생의 정보 이용 현황 및 그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보 환경의 구축 및 개선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3-17. 해당년도 학생에게 제공한 정보환경 및 공간(도서관 등)과 인력 배치 현황

A3-18. 해당년도 정보 환경 이용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사항

A3-19. 해당년도 도서 구입 및 전자 도서를 위한 예산 및 결산 자료

3.3.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3.3.1.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체제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 개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입학 시,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과정 등 주요 단계에서 건강모니터링(건강검진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필요 시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상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3-20. 학생 건강 모니터링 규정 및 지침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체제 등)
- A3-21. 건강관리 안내 자료 및 설명 (홈페이지 등)
- A3-22. 학교가 요구하는 예방접종 항목
- A3-23. 해당년도 학교의 건강검진 및 접종 예산
- A3-24. 해당년도 학교의 학생 대상 시행 시기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일정
- A3-25. 해당년도 학생 주요 질환 현황 (개인정보 제외)

[보관자료]

- B3-7. 해당년도 학생 건강 모니터링 자료
- B3-8. 해당년도 학생 예방접종 현황

3.3.2. 학교와 병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들이 학교와 병원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의료 지원 등)를 갖추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3-26. 학교의 안전관리 체계 (관련 위원회 및 학생진료실의 안전관리 설명)
- A3-27. 원내생 진료 지침 중 감염관리 지침 및 감염원 노출 시 대응 절차
- A3-28. 학생 안전사고 처리 및 관리 절차
- A3-29. 안전관리를 논의하는 위원회의 운영지침
- A3-30. 안전관리지침
- A3-31. 해당년도 안전관리를 논의하는 위원회의 회의 개요
- A3-32. 해당년도 학생들에게 안내한 자료

[보관자료]

- B3-9. 해당년도 안전관리를 논의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3.4. 학생의 복지와 재정관리의 지원

3.4.1. 학교는 학생에게 적절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들의 복지시설(기숙사, 체육 시설, 휴게실, 쉼터, 식당, 매점, 동아리실, 상담실 등)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3-33. 학생기숙사 정보 (선발기준 및 기숙사 입실현황 등 정보)
- A3-34. 해당년도 학생기숙사 현황 (학생기숙사 입실 비율, 기숙사비 지원 현황 등)
- A3-35. 해당년도 기숙사 운영 지원 현황
- A3-36. 해당년도 학생 복지 및 편의시설 현황 (학교 내, 모대학 내를 구분하여 작성)
- A3-37. 해당년도 학교 학생복지시설 관련 예산 및 결산 내역
- A3-38. 해당년도 학생들의 학교 복지시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A3-39. 해당년도 학생재정지원방안 관련 회의 개요
- A3-40. 해당년도 학생 복지에 대한 교수-학생 간담회 개요 (회의 일자, 참석자, 회의 주제, 회의내용 요약, 결의사항 등) 및 의견 반영 실적

[보관자료]

- B3-10. 해당년도 학생재정지원방안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B3-11. 해당년도 학생 복지에 대한 교수-학생 간담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B3-12. 해당년도 학생들의 학교 복지시설 만족도 설문지 양식 및 설문조사 자료

3.4.2. 학교는 학생에게 졸업에 필요한 교육비용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신입생들의 입학 시 졸업까지의 대략적인 학비, 주거비용, 교재비, 개인 실습 기구 및 재료비 등에 대해서 자료집이나 웹문서 등을 통하여 입학 전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는 교내외 장학금 유치 현황과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지급 기준 및 방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3-41. 등록금, 자율경비, 주거비용 등에 대한 안내 (교재비와 실습 기구비 포함)
- A3-42. 장학제도 관련 설명 (장학제도의 종류, 지급기준, 수혜현황, 장학기금 현황)
- A3-43. 해당년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장학제도 안내 현황
- A3-44. 해당년도 장학금 선발 세부지급기준
- A3-45. 해당년도 장학금 신청 안내 현황
- A3-46. 해당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전체 학생 대비 장학생 비율
- A3-47. 해당년도 지역 단체나 공공기관, 동문장학금을 포함한 외부장학금 모집 현황
- A3-48. 해당년도 학자금대출에 관한 안내 현황

3.5. 학생 활동지원

3.5.1. 학생 자치기구와 학생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한 기구를 인정해야 하며,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장차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외의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3-49. 해당년도 학생 자치활동 관련 자료 (학생 직접 입력 가능: 학교의 학생회 조직도, 동아리 현황, 해외 교류활동 등)
- A3-50. 해당년도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학생활동, 동아리 지원과 관련된 예·결산 현황표)
- A3-51. 해당년도 봉사활동 지원체계 및 사회봉사활동 예산 지원 및 현황
- A3-52. 해당년도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결과

3.5.2. 학교는 학생이 학교의 운영체계(governance)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은 교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다양한 학생들(학생 대표 포함)이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3-53. 해당년도 학생참여 위원회 회의 개요

[보관자료]

B3-13. 해당년도 학생참여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4 교육환경-교수 및 자원

4.1. 교수

4.1.1. 학교는 치의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및 임상 교수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의도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 및 임상치의학에 적정인원의 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적정인원의 교수는 학생의 역량 성취를 위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도하며 학생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시행하는 데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1. 교수 임용 규정 (인사 규정)
- A4-2. 기초치의학 교수 명단 (성별, 전공, 담당 교과목, 직위, 역할, 임용 연도 포함)
- A4-3. 임상치의학 교수 명단 (성별, 전공, 담당 교과목, 직위, 역할, 임용 연도 포함)
- A4-4. 해당년도 채용 현황 (공고 포함)
- A4-5. 해당년도 인사에 관한 회의 개요
- A4-6. 해당년도 교수 인사(임용, 승진 등) 현황

[보관자료]

- B4-1. 해당년도 인사에 관한 회의자료 및 회의록

4.1.2. 학교는 치의학교육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위한 교육학 교수와 학생의 인문사회적 역량을 위한 의료인문학 관련 분야 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이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학 교수와 의료인문학 관련 분야 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학 교수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와 운영, 평가를 책임지는 교육전담 조직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인문학 관련 분야 교수는 학생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윤리적 책임감을 함양하고 자기계발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와 평가를 책임져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4-7. 교육학 교수 명단 (성별, 전공, 담당 교과목, 직위, 역할, 임용 연도 포함)

A4-8. 의료인문학 관련 분야 교수 명단 (성별, 전공, 담당 교과목, 직위, 역할, 임용 연도 포함)

4.2.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4.2.1. 교수의 교육활동은 학교가 수립한 교육정책에 따라 학생의 역량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수립한 교육정책에 맞게 교수의 교육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학교는 교수의 교육 활동(강의, PBL facilitation, 기초실습, 임상전단계 실습, 임상실습 등)을 확인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수들이 교육활동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4-9. 해당년도 교수별 교육시간 (강의, PBL, CBL facilitation, 기초실습, 임상전단계 실습, 임상실습 등)

A4-10. 해당년도 교육영역활동 평가표

A4-11. 해당년도 교수별 교육영역 평가 결과

4.2.2. 학교는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 조직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에는 교육 및 연구지원 조직(연구소, 지원실, 센터 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전담 인력(행정직, 조교, 연구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수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12. 교육지원조직 개요 (인력 현황, 예산 포함)
- A4-13. 연구지원조직 개요 (인력 현황, 예산 포함)
- A4-14. 국내·외 연수 제도 관련 자료 (재정 지원 및 지원 실적)
- A4-15. 학교의 교수 연구출장 관련 자료 (재정 지원 및 지원 실적)
- A4-16. 국내·외 학회 참석 지원 관련 자료
- A4-17. 연구활동지원 규정
- A4-18. 해당년도 학술연구지원비 현황

[보관자료]

- B4-2. 연구 및 교육·행정 보조 인력 현황
- B4-3. 교수 개인별 교육관련 국내·외 연수 참여 증빙자료

4.3. 교수 개발 및 지원

- 4.3.1. 학교는 체계적으로 수립된 교수개발정책을 갖추어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 성과를 교수의 교육과정 업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모든 교수에게 치의학교육관련 연수, 세미나, 학회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

학교는 치의학교육관련 연수, 세미나, 학회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주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가 연간 3시간 이상 교육 관련(대학의 교육과정 소개, 교수학습 방법, 학생평가와 피드백 등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연수, 세미나, 학회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임 교수는 발령 후 1년 이내에 치의학교육 관련(대학의 교육과정 소개, 교수학습 방법, 학생평가와 피드백 등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연수, 세미나, 학회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최소 15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발령 이전이라도 임용결정 이후 참석한 교육은 인정)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19. 해당년도 교수별 교수개발 교육 참여 현황 (참여 프로그램명, 참여일, 참여시간)
 A4-20. 해당년도 학교 주관 교육 관련 세미나 목록
 A4-21. 해당년도 교육관련 세미나 및 외부학회 참석 예산 및 집행내역

[보관자료]

- B4-4. 해당년도 학교의 교육세미나 안내문
 B4-5. 해당년도 교수 개인별 교수개발 교육 참여 증빙자료

4.3.2. 학교는 명시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 연구, 봉사 성과 등의 교수 업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교육 및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교수업적평가에는 직급별 또는 기능별(기초/임상/교육학/의료인문학)로 명확한 평가 내용 및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승진심사 및 정년보장 기준에 교수의 교육관련 성과가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22. 교수업적평가의 규정 및 지침 (평가 내용, 승진, 정년에 관한 기준 포함)
- A4-23. 교수 연구년 관련 규정
- A4-24. 해당년도 시행한 영역별 교수업적평가(교육, 연구, 봉사 등) 결과 및 실적
- A4-25. 해당년도 시행한 교수업적평가 관련 회의(인사위원회, 교수업적평가 기준 수립 관련 회의 등) 현황

[보관자료]

- B4-6. 교수의 교육 성과
- B4-7. 교수의 연구 성과
- B4-8. 교수의 봉사 성과
- B4-9. 해당년도 시행한 교수 업적평가관련(인사위원회, 교수업적평가 기준수립 관련 회의 등) 회의자료 및 회의록

4.4. 교육자원의 관리 및 운영

4.4.1.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기본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 수와 교육 방법에 맞는 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소규모 학습실 등) 및 장비(실험 실습 장비, 전산 장비, 안전관리 장비 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공간 및 장비의 규모, 운영 및 관리 현황은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교육공간 및 장비의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 및 인력이 확보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26. 교육공간 안전관리 규정
- A4-27. 기본시설 현황 (강의실, 실험실습실, 소규모 학습실 등)
- A4-28. 장비 현황 (실험 실습 장비, 전산 장비, 안전관리 장비 등)
- A4-29. 기본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 현황 (조직, 예산 및 인력 관련 자료)
- A4-30. 소규모 학습실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관련 자료
- A4-31. 해당년도 교육공간 안전관리 규정 안내 현황

[보관자료]

- B4-10. 해당년도 학교 시설 보수관리 대장

4.4.2. 학교는 구성원이 교육 운영을 포함한 제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사 운영 정보 접근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교육과정 전산망, 행정전산화 등을 포함)을 구비해야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 및 예산을 갖추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4-32. 교육정보시스템(포탈서비스,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홈페이지 등) 현황 (인력, 공간, 예산 등)

A4-33. 해당년도 교육정보시스템 안내 자료

4.5. 연구활동 지원 시설 및 자원

4.5.1. 학교는 교수와 학생의 연구를 위한 실험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내용설명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역량은 학생의 연구 참여를 위한 기반이 되며, 창의적 인재로서의 치과의사 역량을 갖추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의 연구 참여에 앞서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이끌어 내는 데에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교수의 연구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치의학교육 프로그램내의 연구기반시설은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여 및 학생의 연구 참여를 통한 창의성 교육에 필요하다. 학교는 실험실에 연구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34. 연구공간 배정에 관한 규정과 지침
- A4-35. 해당년도 교수별 연구 공간 현황
- A4-36. 해당년도 학교의 연구시설 공간과 설비현황
- A4-37. 해당년도 연구를 위한 지원 현황 (인력, 예산, 집행실적)
- A4-38. 해당년도 실험실 및 설비 이용자 교육 현황

[보관자료]

- B4-11. 해당년도 실험실 및 설비 이용자 교육 자료 및 교육 일지

4.5.2. 학교는 교수 및 학생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실험실과 설비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연구를 위한 실험실과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는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관리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실과 설비는 관련 법규(규정)에 맞는 안전관리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39. 실험실과 설비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 A4-40. 해당년도에 시행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연도별 검토사항
- A4-41. 해당년도 안전점검 현황 (점검 결과, 지적 사항, 개선 처리 방안 포함)
- A4-42. 해당년도 안전관리 관련 위원회 회의 현황

[보관자료]

- B4-12. 해당년도 안전점검일지
- B4-13. 해당년도 장비사용일지
- B4-14. 해당년도 안전관리 관련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4.6. 임상교육 환경

4.6.1. 학교는 학생 임상교육을 위한 전담기구와 학생 수에 충분한 학생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임상교육과 교수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위원회 등)를 설치하고, 기구의 운영규정, 인력배치, 활동상황 등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학생진료시설은 학생의 환자기반 임상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 (2)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하는 진료공간 또는 해당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관리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계약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학생들의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 (3) 학생 임상교육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시설(예: 병원), 운영체제, 교육병원 규정, 학교와의 협약내용, 학생 임상교육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운영사항이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4) 교육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수가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5) 시설의 전체 규모는 학생수와 정해진 임상실습 수행에 적합해야 한다.
- (6) 규모는 학교가 정한 졸업역량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7) 운영 예산의 편성은 요구되는 교육의 내용에 적절한 규모여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43. 학생진료 규정 및 절차
- A4-44. 임상교육 전담기구(위원회 등)의 운영규정, 인력 배치 현황 (관련 위원회 설명)
- A4-45. 해당년도 전담 기구 현황
- A4-46. 해당년도 학생진료시설 현황 (전체 규모 및 현황, 규모의 적정성, 운영체제, 규정, 학생진료시설 관련 계약서)
- A4-47. 해당년도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학생 교육 현황

[보관자료]

- B4-15. 학생진료시설 및 기타 시설의 감염관리 체제, 감염노출시 관리절차
- B4-16. 의료정보/개인정보 보호(환자진료상의 비밀보호 지침) 관련 자료
- B4-17. 치료계획 및 치료종결을 통한 환자의 권리 보호 관련 자료
- B4-18.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 보호 관련 자료
- B4-19. 해당년도 학생진료시설 운영 예산 및 결산 자료

4.6.2. 학생진료시설을 전담하는 진료보조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진료보조인력은 학생 임상교육과 교수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다. 따라서 임상교육에 적절한 규모로 진료보조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들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판단근거로 학생 및 교수의 의견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업무지침서 등에 해당 직무가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48.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규정, 업무지침
- A4-49. 학생진료시설 전담 진료보조인력 현황 (치과위생사, 기능원, 행정조교 등)
- A4-50. 해당년도 진료보조인력의 교육 훈련 현황
- A4-51. 해당년도 진료보조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학생 및 교수의 의견조사 및 반영 결과

[보관자료]

- B4-20. 해당년도 진료보조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학생 및 교수의 의견조사 자료

4.6.3. 학생진료시설의 임상교육 담당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관리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임상교육 담당자는 학생진료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 전임교수, 임상교수, 교육전담교수, 겸임교수, 임상지도교수, 임상강사, 전공의 등을 포함하며 학교는 기간을 정하여 임상교육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진료실 임상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임상교육 담당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임상교육 담당자가 학생이 수행하는 진료행위에서 갖는 지도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임상교육 담당자의 역할과 참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임상교육 담당자가 학생지도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며 임상교육 담당자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 A4-52. 임상교육 담당자 관련 규정
- A4-53. 해당년도 임상교육 담당자 현황 (명단, 역할, 교육시간)
- A4-54. 해당년도 교육담당자 배치표
- A4-55. 해당년도 임상교육 담당자의 교육 현황 (참석자, 일시, 주요 교육 내용)

[보관자료]

- B4-21. 해당년도 임상교육 담당자의 교육 자료

5 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5.1 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5.1.1. 전문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전문석사학위 수여와 관련 학칙을 포함한 규정을 갖추고 이에 따라 매년 학위 심사 및 수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5-1. 전문석사학위수여 관련 규정

A5-2. 해당년도 전문석사학위수여 현황

5.1.2. 전문석사학위 졸업생의 최종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5-3. 전문석사학위 졸업생의 최종성과 확인자료

5.1.3. 전문석사학위 수여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내용설명

전문석사학위 수여 제도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학위심사 및 수여제도에 대한 자체 평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또는 의견 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그 성과에 대해 분석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

A5-4. 해당년도 평가결과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 개발 필요성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규정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치과대학의 변화를 자극하고, 치과의료와 의료인력의 질적 증진 및 치과의료행위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데 있다.

● 역량의 의미

역량(competency)이란 치과의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이며 전문직업정신, 윤리적 가치와 비판적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괄한다.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2012. 11.

영역별 세부 역량 수

영역	세부 역량 수
I.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수행능력	3
II.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능력	1
III.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 관련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5
IV.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3
V.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는 능력	8
VI.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	26
VII. 치과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3
합계	49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의 역량 서문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의 역량은 대한민국의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을 규정한다. 치과의사가 구강 건강과 관련한 환자의 ‘요구’사항을 “진료”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며,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 “진료” 행위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치료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교육과 자문, 다른 전문의료인에게로의 진료 의뢰, 치료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관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치료성적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침습적 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역량을 가진 치과의사는 면허를 부여 받아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신이 돌보게 되는 모든 환자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정서적인 교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과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역량의 수준과 평가

치과의사의 역량을 정의하는데 있어 모든 세부역량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치과의사는 자신의 의료행위의 질적 수준과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한 역량은 등급을 가지지 않으며 각 역량의 행위는 정해진 수준의 행위를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없다’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역량은 스스로의 평가와 객관적 외부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전문의료인으로서 성공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내린 결정과 진료 행위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확인하고 진료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세부 역량은 그와 연관된 지식, 기술 및 전문직업성이 그 요소로서 포함된다. 세부역량의 성공적인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수준’의 결정은 관련 교육기관과 면허기관 등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역량의 적용 범위

우리가 만든 역량은 일반 치과 개원의를 표준으로 하여 그들의 진료대상이 되는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는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규정과 윤리적 규범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역량의 활용

치과의사의 역량을 규정하는데 있어 치과의사의 모든 행위는 그들이 배운 생명과학, 행동과학 및 임상치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직업인의 윤리적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역량의 규정이 치과의사의 양성과정에서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태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지침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역량의 승인

2011년 치과의료와 의료인력의 질적 증진 및 치과의료행위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승인받게 되었다. 이로써 치과의사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확대될 것이며, 치과의사 양성과 선발에 있어 역량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역량

영역	세부역량
1.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수행능력	1.1. 치과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윤리적, 법적 기준을 인식하고 지킬 수 있다.
	1.2. 학대, 방치 등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전문가적 행동과 조치를 할 수 있다.
	1.3. 환자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사전동의와 같은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능력	2.1.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
3.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 관련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3.1. 자신의 업무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의 진료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3.2. 전문인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사 관계를 정립하고 환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3.3. 환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환자중심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3.4. 진료팀과 전문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3.5. 진료팀 외에 접촉하는 업무 관련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4.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4.1. 치과진료와 관련된 기초치의학과 임상치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4.2. 의료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4.3. 진료행정, 재정 및 인력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운영할 수 있다.
5.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는 능력	5.1. 환자의 주요호소증상을 파악하고 병력을 취득할 수 있다.
	5.2. 환자의 진료기록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다.

	5.3.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구내외 진찰, 임상검사,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5.4. 치아 및 주위조직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5.5. 악안면외상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5.6. 구강내 연조직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5.7. 부정교합과 치아안면의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5.8. 소아 및 청소년기 환자들의 행동·심리적 특성과 구강 내 성장변화에 부합되는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6.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	6.1. 환자의 전신질환이 치과진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고 있다.
	6.2.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기술을 할 수 있다.
	6.3. 치관내수복(intra-coronal)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6.4. 치관외수복(extra-coronal)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6.5. 치수와 관련한 급성 통증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6.6. 기본적인 근관치료를 할 수 있다.
	6.7. 치석제거술·치근활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6.8. 만성치주염에 대한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수 있다.
	6.9. 치주건강 유지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6.10. 단순 연조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6.11. 국소마취를 할 수 있다.
	6.12. 약물을 이용한 행동조절을 할 수 있다.
	6.13. 단순 발치를 할 수 있다.
	6.14. 단순한 외과적 발치를 할 수 있다.
	6.15.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약을 선택하고 처방할 수 있다.
	6.16. 단순한 절개와 배농을 할 수 있다.

	6.17. 생검을 위한 단순한 조직 절제를 할 수 있다.
	6.18. 보철을 위한 단순한 외과적 시술을 할 수 있다.
	6.19. 단순 고정성가공의치와 국소의치 및 총의치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술할 수 있다.
	6.20. 고정성가공의치와 국소의치 및 총의치의 기공작업을 지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6.21. 기본적인 심미치료를 할 수 있다.
	6.22. 교합을 조정할 수 있다.
	6.23. 악관절을 포함한 구강악안면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6.24. 공간유지장치와 단순한 가철 교정장치를 설계하고 사용할 수 있다.
	6.25. 구강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6.26. 감염관리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교차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7. 치과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7.1. 치과진료와 관련된 직업적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다.
	7.2.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다.
	7.3. 치과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구조술을 할 수 있다.

2022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발 행 일 2024년 02월 25일

인 쇄 일 2024년 03월 01일

발 행 처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202호

전 화 (02) 462-0103

팩 스 (02) 742-1109

홈페이지 www.kidee.org

인 쇄 열린박스
